탄 원 서

피고인	권영진	국회의원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 2026고합566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1. 권영진 개인에 대한 심리 요청

2026년 8월 공개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권영진 의원 등이 2025년 1월 15일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여러 사람의 집단적 현장행동을 설명하는 기사만으로 권영진 개인의 정확한 위치·지시·의사연락·고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정보의 부족 자체가 무죄 증거는 아닙니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에 따라 인물별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6월 29일 추가 입건 발표

특검의 추가 입건 발표를 다룬 기사에서는 현장 영상 분석과 SNS·인터뷰를 통한 영장 집행 부당성 주장, 주도적 역할 의혹 등이 언급됐습니다. [2] 그러나 특정 인터뷰 문장 전체를 권영진 개인의 발언인 것처럼 인용하거나, 수사기관이 설명한 집단행동을 곧바로 권영진의 직접 행동으로 바꿔 적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발언 원문·시각·현장 행동과의 연관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변호인 항변과 실제 영상의 구별

2026년 10월 13일 공판준비기일 관련 보도에는 권영진 측이 폭행·협박 및 인간벽 형성·모의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별 행동을 특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 [4] 이는 방어권 행사에서 나온 설명이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권영진이 실제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타인의 차단행동을 지시하거나 이에 의사연락을 했는지, 집행공무원이 고지·경고한 내용을 알았는지 연속 영상과 진술로 심리해야 합니다.

4. 형법상 기본 실행행위와 가중요건

형법 제136조의 폭행 또는 협박과 제144조 제1항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등 가중요건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5] [6] 현장 참석 또는 수사권 비판만으로 모든 법률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직접 몸싸움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과의 공동가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합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과 제6조의 직무·권한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2025년 실체적 형벌법규와 2026년 특별검사의 권한에 관한 법령·부칙의 기준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9]

5. 공소장 기재 지적과 최신 절차 확인

재판부가 10월 13일 기본 실행행위 및 공소장 기재 방식의 흠결을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3] [8] [10] 이 지적은 방어권 보장에 중요하지만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11월 5일로 예고된 후속 기일과 공소장 변경 여부는 문서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 다른 의원의 수사권 항변을 권영진 측의 고유한 주장으로 오인하지 말고, 이 사건에 공통된 절차적 문제와 권영진 개인의 변호인 주장을 구분해 주십시오.

6. 결어와 예비적 양형

권영진 의원에게 귀속되는 혐의를 발언·위치·행동·결과별로 분리해 판단해 주십시오. 합리적 의심이 남는 공소사실에는 무죄 원칙을,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는 개인의 주도성과 참여시간·실제 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형법 제51조에 따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누구에게나 같은 증명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권영진 | 참고자료 및 제출 전 확인

1. 실제 본문에 인용한 공개자료

[1] 연합뉴스 2026.8.14. 의원 4명 불구속 기소·94GB 채증자료 주장

[2] 연합뉴스 2026.6.29. 김기현·권영진 추가 입건 관련 특검 발표

[3] 연합뉴스 2026.10.13. 공판준비기일·피고인별 항변 및 공소장 지적

[4] 아시아투데이 2026.10.13. 공소장 개별행위 특정 요청과 변호인 반론

[5]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6]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7]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8] 뉴스핌, 2026.10.13. 형사합의35부 재판부 공소장 보완 요구·차기 준비기일

[9]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특검법 제2조·제6조 (법률 제21856호, 2026.7.21 개정 연혁 확인)

[10] 서울신문 2026.10.13: 의원 4명 준비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관련 재판부 지적

2. 사건기록과 직접 대조할 항목

- 직접 발언·인터뷰 원문 및 시각
- 공동가담 주장과 개인별 현장 행동의 구별
- 공통 절차 항변과 권영진 측 개별 항변 구별